

| | |
|------|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시설안전팀-3512 |
| 보존기간 | 년 |
| 결재일자 | 2016.07.01 |
| 공개여부 | 공개 |

| | | | |
|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|
| ★담당자 | 팀장 | 건설안전본부장 | 사장 |
| | | | 07/01 |
| 고정일 | 박성규 | 김승호 | 박현출 |
| 협 조 | | | |
| 감 사 | 감사실 | 감사실 | |

컨테이너사무실 가설건축물 이전 승인 계획(안)

2016. 6.



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
시설안전팀

컨테이너사무실 가설건축물 이전 승인 계획(안)

개 요

- 가락물 전동차 전용램프(#12) 신설을 위한 공사부지 확보
 - 한국청과 채소경매장 81번 비가림 내 컨테이너 No.126동 이전 배치
- 동부팜청과 채소경매를 위한 경매장 공간 확보
 - 동부팜청과 채소경매장 74번 비가림 내 컨테이너 No.122동 이전 배치
- ※ 공사 가설건축물심의회 의결(6.21)에 따른 상정 의안 2건 승인 조치

1. 관련근거

- 가. 한국청과(주) 총무팀 제2016-5호(2016.1.6.) "비가림시설(81동) 철거 및 복원 승인 요청"
- 나. 동화청과중도매(법)인조합 동중조 2016-22(2016.4.21.) "조합 컨테이너 이동 설치 승인요청 건의 통보"
- 다.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제3장 및 제4장
- 라. 공사 제2차 가설건축물 심의(2016.6.21.) 실시 결과

2. 컨테이너사무실(No.126동, No.122동) 시설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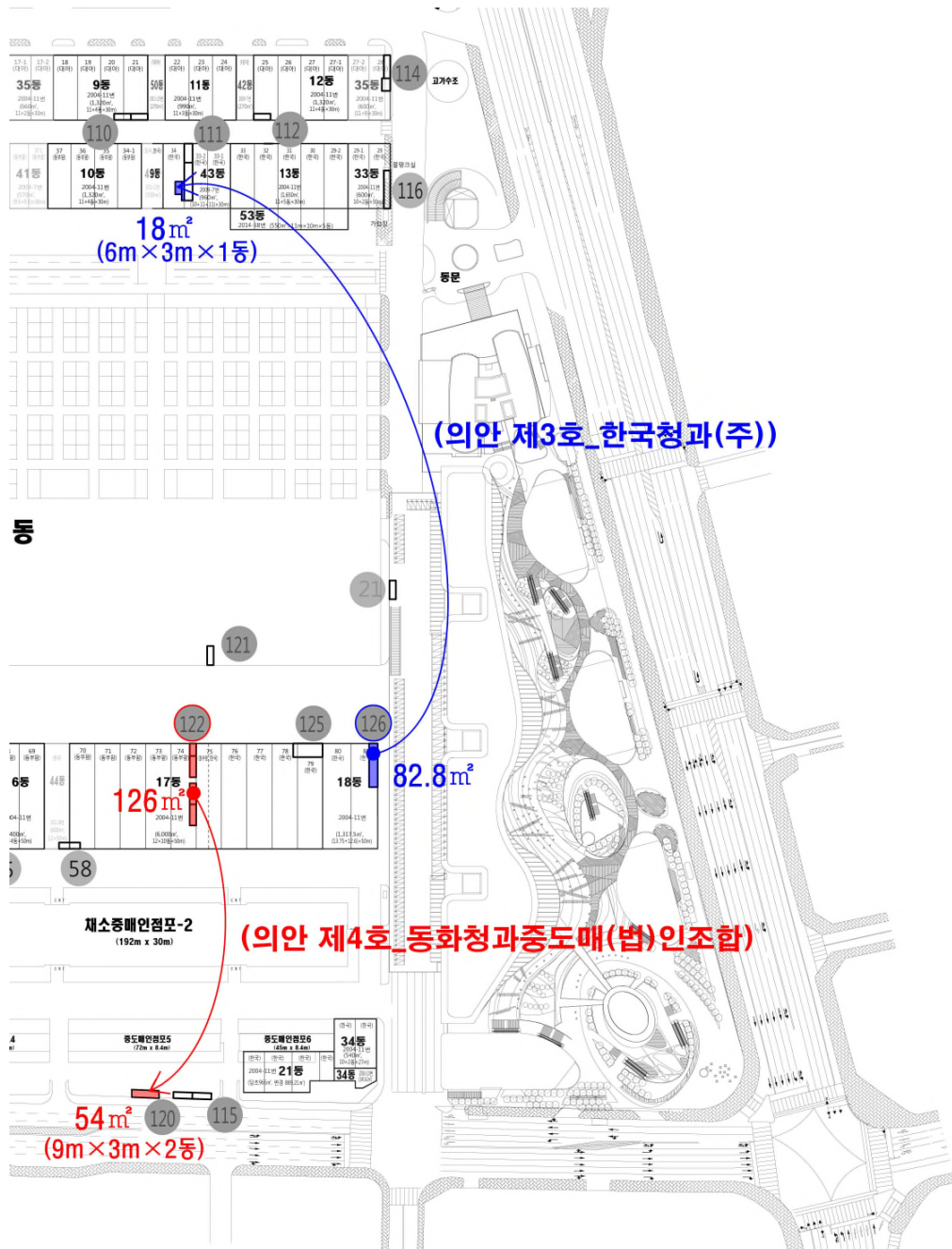
| 구 분 | No. 126동 | No. 122동 |
|---------------|--|---|
| 소 유 주 | 한국청과(주) | 동화청과중도매(법)인조합 |
| 규 모 | 82. ⁸ . ₀ m ² | 126. ⁰ . ₀ m ² |
| 구 조 | 컨테이너(필로티) | 컨테이너(필로티) |
| 설치용도 | 임시사무실 | 임시사무실 |
| 가설건축물축조신고 No. | 2008-45번 | 2008-45번 |

3. 컨테이너사무실(No.126동, No.122동) 이전 계획

가. 이전 개요

| 구 분 | No. 126동(의안 제3호) | | No. 122동(의안 제4호)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기존 | 변경 | 기존 | 변경 |
| 규 모 | 82.8 _{m²} | 18.0 _{m²} | 126.0 _{m²} | 54.0 _{m²} |
| 구 조 | 컨테이너(필로티) | 변경없음 | 컨테이너(필로티) | 변경없음 |
| 설치용도 | 임시사무실 | 변경없음 | 임시사무실 | 변경없음 |

나. 이전 계획



4. 2016년도 제2차 가설건축물 심의회

가. 심의회 실시 현황

- ① 일 시 : 2016년 6월 21일(화)
- ② 장 소 : 서면 결의
- ③ 참석자
 - 가설건축물 심의회 위원

| 구 분 | 소속 | 성명 | 의안 번호 | |
|-----|---------|-----|-------|-----|
| | | | 제3호 | 제4호 |
| 위원장 | 건설안전본부장 | 김승호 | ○ | ○ |
| 위 원 | 기획팀장 | 박정현 | ○ | ○ |
| 위 원 | 재무팀장 | 김진중 | ○ | ○ |
| 위 원 | 물류개선팀장 | 윤덕인 | - | ○ |
| 위 원 | 농산팀장 | 신장식 | ○ | - |
| 위 원 | 수산팀장 | 최영규 | ○ | ○ |
| 위 원 | 환경교통팀장 | 김인수 | ○ | ○ |
| 위 원 | 시장개선팀장 | 임영규 | ○ | ○ |

○ 간 사 : 시설안전팀장 박성규

④ 소관부서 및 안건

| 구 분 | 의안 제3호 | 의안 제4호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소관부서 | 유통물류팀 | 농산팀 |
| 안 건 | 한국청과(주) 컨테이너 126동 (임시사무실) 이전 | 동화청과중도매(법)인조합 컨테이너 122동(임시사무실) 이전 |

⑤ 심의결과 : 원안 승인(의안 제3호, 제4호)

5. 가설건축물 승인조건

가. 특기 사항

| 의안 제3호 | 의안 제4호 |
|--|--|
| ① 본 시설의 설치,관리,철거 비용은 <u>한국청과(주)</u> 에서 부담한다. | ① 본 시설의 설치,관리,철거 비용은 <u>동화청과채소중도매(법)인조합</u> 에서 부담한다. |

| 의안 제3호 | 의안 제4호 |
|--|---|
| <p>② 시설현대화사업, 시장의 기능유지 또는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설치자의 부담으로 즉시 철거한 후 원상 복구하며, 시설물 및 공작물, 설비 등에 지출한 비용과 관련되는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는다.</p> | <p>② 시설현대화사업, 시장의 기능유지 또는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설치자의 부담으로 즉시 철거한 후 원상 복구하며, 시설물 및 공작물, 설비 등에 지출한 비용과 관련되는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는다.</p> |
| <p>③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농산물 판매장 또는 창고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.</p> | <p>③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농산물 판매장 또는 창고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.</p> |
| <p>④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로티 구조물 위에 설치할 것</p> | <p>④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로티 구조물 위에 설치할 것</p> |
| <p>⑤ 가설건축물(컨테이너) 1층 필로티 구조 설치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며, 농산물 보관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.</p> | <p>⑤ 가설건축물(컨테이너) 1층 필로티 구조 설치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며, 인접 중도매인점포의 사적인 농산물 보관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.</p> |
| <p>⑥ 한국청과(주)는 공사시공중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,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</p> | <p>⑥ 동화청과채소중도매(법)인조합은 공사시공중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, 안전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</p> |
| <p>⑦ 한국청과(주)는 본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, 시설물의 정상사용 및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, 본 시설의 설치, 사용, 철거 등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</p> | <p>⑦ 동화청과채소중도매(법)인조합은 본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, 시설물의 정상사용 및 화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며, 본 시설의 설치, 사용, 철거 등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</p> |

나. 공통 사항

- ① 가설건축물 이전을 위한 설계도서는 “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”에 의뢰하여 작성토록 할 것
- ②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의 건축공사와 가스공사 또는 전기공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하고,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**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**를 사용할 것
 -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“건설업 면허”를 소지한 업체
 -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“전기공사업 면허”를 소지한 업체
- ③ 시설공사 착공전 우리공사에 착공계를 제출토록 할 것

- ④ 가설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설치자가 부담할 것
- ⑤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을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토록 할 것
- 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,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 부서의 확인을 받아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송파구청에 존치기간 연장신고할 것

6. 행정사항

| 의안 제3호 | 의안 제4호 |
|--|---|
| ①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(시설안전팀) | ①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(시설안전팀) |
| ② 가설건축물 승인 조건 이행확인서 징구(유통물류팀) | ② 가설건축물 승인 조건 이행확인서 징구(농산팀) |
| ③ 착공계 제출(주한국청과→시설안전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착공계 •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• 설계도서 •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| ③ 착공계 제출(동화청과채소중도매(법)인 조합→시설안전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착공계 •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• 설계도서 •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|
| ④ 시공관리(주한국청과, 시설안전팀) | ④ 시공관리(동화청과채소중도매(법)인 조합, 시설안전팀) |
| ⑤ 준공계 제출(주한국청과→시설안전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준공계 • 준공도면(설계변경시) • 준공사진 • 제세공과금 납부고지서 | ⑤ 준공계 제출(동화청과채소중도매(법)인 조합→시설안전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준공계 • 준공도면(설계변경시) • 준공사진 • 제세공과금 납부고지서 |
| ⑥ 시설사용계약 체결(유통물류팀) | ⑥ 시설사용계약 체결(농산팀) |
| ⑦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(유통물류팀) | ⑦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(농산팀) |

- 붙 임 : 1. 가설건축물심의회 결과보고 1부
 2. 이행확인서 각1부
 3. 일상감사 요청서 1부. 끝.